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203호

「통합공고」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합공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 코드 및 기관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 (제33조의2, 제133조, 제134조)

-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의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 (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공포, 2022.3.1.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제34조 제4항을 반영하기 위해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시 제출자료 요건 확대

나. 수출요령(별표1), 수입요령(별표2), 특정화학물질(별표13), 생물작용제 및 독소(별표13의2),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별표15), 미국수출 패류 검사대상 품목(별표17) 개정

-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 코드 변경사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전자우편 : iamaboy1@korea.kr

- 팩스 : 044-203-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전화 044-203-4019, 팩스 044-203-4710, 전자우편 iamaboy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